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67
----------	-------

발의연월일 : 2025. 9. 1.

발 의 자 : 조지연 · 신성범 · 임이자
김기현 · 강승규 · 최수진
성일종 · 김예지 · 서지영
신동욱 · 이성권 · 박충권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에게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 및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구직 여부 결정에 필수적인 근로 조건이나 채용심사의 평가기준, 전형별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음.

EU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채용 전 임금조건을 명확히 공개하는 등 임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공고를 게시할 때 임금을 포함한 주요 근로조건을 사전에 명시하고, 채용 전형별 세부 일정 및 평가기준을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근로조건 등의 명시) 구인자는 채용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채용광고의 게시방법, 게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 업무 내용
2. 고용형태
3. 계약기간
4. 임금 및 복리후생
5.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6. 주근무지
7.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 전단 중 “채용일정”을 “채용의 전형별 세부일정, 채용심사의 평가기준”으로, “변경”을 “변경, 채용대상자 확정 발표 예정일”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3조의2(근로조건 등의 명시) 구 인자는 채용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 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채용 광고의 게시방법, 게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한다. 1. 업무 내용 2. 고용형태 3. 계약기간 4. 임금 및 복리후생 5.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6. 주근무지 7.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u>채 용일정</u>,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u>변경</u> 등 채용과정 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 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u>채 용의 전형별 세부일정, 채용심 사의 평가기준</u>----- -----<u>변경, 채 용대상자 확정 발표 예정일</u>----- ----- -----